

2005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김 대 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I. 지방세정 여건과 추진방향

정부가 지난 해에 납세자들의 요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행한 부동산세제개편 방안이 금년 1.5자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 공포되므로써 시행하게 되었다.

종래의 부동산 보유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나누어져 있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산정방식과 세율체계가 서로 달라 세 부담이 불공평 하니 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금번의 세제개혁은 지방세의 공평과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종전의 부동산 보유세는 서울보다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강남보다는 강북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불공평문제가 있었다.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공평 시비도 계

속되어왔었다.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정책과 세인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다.

전국합산누진과세하는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한다는 문제외에도 시·군·구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을 점점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종전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었다. 지방자치 시행초기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부족과 세 부담 급증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부동산세제개혁은 지방세가 안고 있었던 오랜 숙제를 정부의 혁신의지와 더불어 지방세 종사자들이 흘린 땀의 결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바뀐 세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무리 없이 과세하는 일이다.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과세하는 일은 지방세법 개정 에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한데 모아야 하고 전국합산과세하는 토지와 주택은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관련자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법정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시간의 근무도 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시뮬레이션 등 재산세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에 재산세 과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 정신을 살려서 지방세정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납세자들의 의식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지속적인 세정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고객인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의 추세에 맞추어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고 고객인 납세자를 지향하는 세정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I. 세부 추진사항

1. 부동산 과표제도의 정착 · 발전

가. 건물과표 조정기준의 적정운영

건물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을 m²당 180천원에서 460천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따라 건물간 형평성 및 거래시가 대비 적정성 시비

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과표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적정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용도분류, 가감산을 등 일부기준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와 다른데 따른 민원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05년도 재산세 부과후에 발생하는 문제점 들은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06년에 적용할 건물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타물건 과표에 대한 산정방식 등 조정

건물에 대한 과표가 시가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레저시설등 10종), 부수시설물(엘리베이터등 9종), 입목, 어업권, 광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기타물건에 대한 과표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기타물건 과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시가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기타물건간에도 업종·용도 등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골프연습장·승마장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문제와 과표운영 방안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지방세 과표조합(가칭) 설립

합리적인 지방세과표결정을 지원하고 지방재정 확충기반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지

방세 과표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은 2005년부터 시가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빌딩·상가 등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시가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빌딩·상가 등 일반건물과 시설물·장비·차량 등 기타물건에 대한 과표도 시가방식으로 전환되어야 과세대상간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물·장비·차량 등 기타물건의 시가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감가상각 자산과 지하자원 등의 시가평가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과표평가시스템 개발·보급, 평가정보의 DB화 및 서비스 제공, 평가공무원 및 법인담당자에 대한 연수 등의 업무를 과세권자인 시·군·구별로 각각 수행하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과표조합같은 것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가 이러한 과표업무를 행정자치부의 실무자들이 마련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2. '05년도 재산세 부과 및 종합 부동산세 부과지원

가. 부동산 관련 과세자료 정비

'04년까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고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주택에 대해

서는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개선하였으므로 주택은 소재지별, 개인별 과세자료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재산세 과세대장과 토지·지번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나, 단독주택가격 조사와 병행하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 시군구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황실 설치, 인력배치, 대상주택 선정, 추진상 문제점 파악·보고 등 바뀐 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협조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여야 할 단독주택은 대략 430만호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단독주택 약 450만호 중 3%인 13만5천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 고시하였다. 고시한 가격은 이의신청을 거쳐 '05. 3. 3까지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시·군·구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결정하고 4.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조사·산정요령에 대한 시·군·구 조사요원 교육을 완료하였다. 또한 단독주택 시가조사인력 확충을 위한 소요인원 및 예산 확보작업도

마무리 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다. '05년도 재산세 부과 준비

시·군·구에서는 세제개편에 따른 정기 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가 필요하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으면 지방세 유지보수 업체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 DB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한후 시·도 담당자 및 유지보수업체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별 업무처리 표준지침, 자료관리 방법, 유형별 과세 예상쟁점,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준비 내용 등 재산세 운영 실무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군·구 직원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구가 있는 시의 토지분 합산과세 및 구별 운용방안을 점검하고 재산세의 직전년도 세액 적용 방법 및 대사프로그램 등을 사전 준비하며, 종합부동산세 자료 제공에 따른 오류자료 사전 점검하기위하여 '05 재산세 과세대비 종합시물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 과년도 종합토지세 운영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협조

1999~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는

전자정부지원센터(정보화지원과 세세정팀)에서 관리하면서 수시 조정과 과세착오, 소송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에서는 자료조정 시기별(4월 조정분 3. 15/12월 조정분은 11. 15까지)로 입력을 완료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취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협조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별 과세자료에 오류나 자료추출에 따른 오류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 종합부동산세액의 지방교부 기준 마련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국세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입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 위한 교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05년 부동산 보유세 세수를 추계해보면 28,000억원(주택, 토지, 건물분 재산세)으로 '04년 보유세 세수보다 약3,6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약 6,900억원으로 추계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우선 보유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잔여재원은 교부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교부기준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원 교부시 지방세 징수실적 및 징수노력도 등을 분석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 지방세운영의 내실화

가. 과학적인 지방세 통계관리

지방세 통계관리는 현재 세정연감이나 지방세개요수첩의 발간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방세제 개선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 통계가 그동안 소홀하게 관리되는 점이 있었다.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도비 분석법, 회귀분석법 등 통계기법의 적용 가능성 모색 등 지방세 추계 및 통계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통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기관(통계청 통계연수원 등) 위탁교육이나 과학적 지방세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과세자료 표준화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지방세정연감 등 지방세 통계자료는 적기에 발간·보급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나.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종래 지방세 세무조사는 각 자치단체별로 법인 등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하였다. 이로인하여 납세자들은 계획성이 없는 세무조사, 중복 세무조사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모호성 및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의 참여식 연찬회 정례화, 세무조사 활성화단체 등 선진 세무조사기법을 공유·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

다 법인 등 납세자의 지방세 탈루행태 다양화에 대응한 세무조사 기법도연구검토 되어야 할 과제이다. 금년에는 합동세무조사반 편성, 정기세무조사기간 설정 등 계획적이고 투명하며 피조사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규모의 법인 본점 등 기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기간 설정, 시·도, 시·군·구 합동세무조사체계 구축, 세무조사 예고제 등 세무조사규칙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지방세 감사업무의 내실운영

지방세와 관련된 비리유발 요인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 취약요소는 집중·반복 감사하고 반복·유사지적 사례, 업무소홀, 직무태만, 고의적 탈루 등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신분상 조치를 병행한 신상필벌(信賞必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감사대상 과제 및 징계양정은 공개하여 공명정대한 지방세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감사 등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맞게 자치단체 세무감사 담당자, 지방세 전산개발업체 등 참여하에 전산감사기법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세청 등 유사 세정기관 전산감사기법의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또한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연간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과제별 감사기준 및 적발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지방세 세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방세정 운영의 미비점 개선

가. 지방세 운영세칙 개정추진

2001. 2. 1 지방세 운영세칙이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의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 및 심사 결정 내용,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하여 운영세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주민세 등 운영개선 추진

소득세 및 법인세 과오납 환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과오납 환부 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및 환급지, 가산세 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주민세 또는 사업소세의 과세단위인 “사업소” 및 “종업원”등의 적용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적용방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세(개인사업장할, 법인균등할, 법인세할)·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의 “사업소”, 주민세(법인균등할, 법인세할)·사업소세(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종업원”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세 사업소세의 과세단위인 “사업소”등에 대한 법적의미와 사실적 개념을 일치시켜 과세 명확성과 통일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면허세 부과 징수체계 개선추진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고 수시·정기분 면허세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여야 하겠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검사를 받는 경우 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허의 종류는 1종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666종에 이른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와 동시에 과세대상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세대상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대상이 탈루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과세자료 관리방법을 좀 더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누락없는 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납세서비스 강화 및 세정정보화 지속추진

가. 납세자 지향의 납세편의시책 추진

납세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납세서비스 요구도 고급화·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납세환경 아래서 고객(납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의 행정편의적 민원처리방식에서 신속하

고 친절한 납세자 위주의 민원 처리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우수시책을 전파하고 국세청, 자치단체 등 민원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객지향의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D/B 구축도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나. 지방세 정보화의 지속 추진

지방세 과세대장 전자화,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지방세 표준코드 관리, 지방세 전산업무 처리지침 마련, 지방세 정보화 수준 측정지표 개발 및 사이버지방세청 구축 등 지방세 정보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은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그 본질이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되 납세자의 과세자료나 세액 확인 각종 민원처리 등을 One-stop방식으로

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지향의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지방세 교육훈련 및 연찬회의 강화를 통한 세정인력의 정예·전문화 또한 고객지향의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II. 마무리

이상의 과제는 지방세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 등 지방세정분야의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시장의 일반원리가 지방세정을 포함하는 공공분야에도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면서 올 한해도 지방세정이 다른 행정에 앞서갈 수 있도록 지방세정인들의 분투와 건승을 함께 기대하는 바이다. 